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추가 조치사항 안내

1. 관련근거

-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0.12.6.)
-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0365(2020.11.22.)
-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1122(2020.11.29.)
- 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1740(2020.12.6)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2.6)를 통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3. 중앙정부, 지자체, 관련 산하 및 공공기관에서는 방역조치의 대상이 되는 시설 등에 이를 안내하여 주시고, 2.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배포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 아 래 -

○ 적용 기간 : 2020년 12.8(0시) ~ 2020년 12.28(24시)까지

○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지자체별로 대상 지역 조정 가능

1) 아파트 내 편의시설

-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커뮤니티센터 등 복합편의 시설 운영 중단

4. 위와 같은 방역 조치의 이행을 위해

- 각 부처 및 지자체는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 대상 시설에 방역 지침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 각 지자체는 방역 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고,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본부(행정안전부)는 중앙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각 지자체, 관련 부처의 이행상황 점검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장

수신자 본부각과장, 중앙행정기관,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사



주무관 강재희 생활방역팀장 김정숙 전략기획반장 손영래 전결 2020. 12. 7.

협조자

시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1881

접수 학생건강정책과-10616 (2020. 12. 8.)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 <http://ncov.mohw.go.kr>

전화번호 044-202-1722 팩스번호 044-202-1971 / jaehuekang@korea.kr / 비공개(5)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